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22
----------	-------

발의연월일 : 2024. 2. 16.

발 의 자 : 최혜영 · 김민석 · 정춘숙
유정주 · 임호선 · 오영환
장경태 · 김용민 · 강민정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 성장 견인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특화식품과 미래식품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여 전국 각 지역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진흥원”을 “진흥원(분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권역별로 분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 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 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의 설립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u>진흥원은 권역별로 분원을</u> <u>둘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 -----. ⑥ ----- <u>진흥원(분원을 포함한다)</u> ----- ----- ----- ----- -----. ⑦ -----제4 항----- ----- ----- -----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